

의안번호	2213716
의 퇴 인	강선영의원
회 답 일	2025.11.26.
추계번호	25D5692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

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 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제1호 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	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서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0조제1항제1호(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(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)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, 공작물·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·재배 또는 방치를 금지하고 있음
- 개정안은 제1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비행안전구역 중 제1구역에서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로 현행보다 협소하게 정의하는 내용으로, 현재 1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중 일부 시설을 1구역 밖으로 이전설치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
- 다만,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군사시설로 ‘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’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,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의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

기 곤란함

-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군사시설의 종류를 동법 시행령 [별표5]¹⁾에 규정된 시설 이외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 - 이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설치한 시설은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라 이전설치가 필요한 시설현황

분 류	시설종류	시설 현황(개)	부지확보 필요면적(㎡)	부지매입비 (백만원)
경계시설	초소 및 전투진지 등	19	1,289	104
작전 및 지원시설	비행대대, oo포상 작전대기실, 발진실 등	38	37,426	41,986
저장시설	창고 등	4	2,538	195
정비지원	정비관련시설 등	42	21,865	9,444
탄약/유류시 설	탄약고, 유류고 등	10	4,449	2,362
행정시설	사무실, 생활관, 복지시설 등	23	22,871	7,553
기타시설	종교, 체육시설 등	3	453	595
계		139	90,891	62,239

주: 2025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지매입비 산정

자료: 국방부

- 1)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」 [별표 5]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
 1.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가. 활주로 및 유도로, 주기장, 계류장,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
 - 나. 항행안전시설
 - 1) 무지향표지시설(NDB), 전방향표지시설(VOR), 거리측정시설(DME), 계기착륙시설(ILS/MSL), 레이더접근관제시설(RAPCON), 전술항행표지시설(TACAN) 등 전파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공보안무선시설
 - 2)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돕기 위한 항공등화시설
 - 3)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기의 관제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관제통신시설
 - 다. 활주로 관리반(Runway Supervisory unit)
 - 라. 풍향송신장비, 운고측정기, 자동시정측정기 등 기상장비
 - 마. 관제탑
 - 바. 항공기 초과저지망
 - 사. 분사방풍벽
 - 아. 엄체호 및 리베트먼트
 - 자. 그 밖에 항공기 운용을 위한 필수 시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필수 시설의 세부항목을 합참의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게 할 수 있다.

- 개정안에 따를 경우, 상기 시설 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군사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 검토를 통해 제1구역 외부로 이전설치가 필요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- 또한, 각 시설별 부지확대에 따른 경계울타리 이전, 공시지가 상승률, 실제 사업진행 시 소요될 부지매입비 등에 대해서도 추정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에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